

제285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88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· 학교 밖 청소년
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(안) 검토보고서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88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0. 5.
- 회 부 일 : 2021. 10. 8.

2. 제안이유

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안전망 구축 · 운영과 아동 · 청소년 상담사업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「청소년 상담복지센터」와 「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」의 위탁기간이 2021.12.31.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 시설 현황

구분 \ 시설	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
위 치	정릉로 242(정릉동 966-1)	동소문로 26다길 8-2
규 모	연면적 235.38㎡ (지상4층)	연면적 283.86㎡ (지하1층/지상3층)
사업내용	아동 · 청소년 상담사업, 청소년 안전망 구축 · 운영,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	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가. 수탁자 현황

수탁법인	시설명	수탁기간	종사 자수	소요예산 ('21년 기준)
국민학원	청소년상담복지센터	2019.1.1.	6명	352,925 천원 (국 48,735천원, 시 67,610천원, 구 236,580천원)
국민대학교	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	~ 2021.12.31	3명	170,494 천원 (국 70,897천원, 시 70,897천원, 구 28,700천원)

다. 위탁운영 개요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¹⁾ 이내
 ※ 2021.5.6.(조례 제1370호)에 의거 “5년 이내 ⇒ 5년으로” 로 변경
- 위탁사무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무
- 위탁방법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
 - 위원회 운영기간 : 2021. 11월 ~ 안전심사 후 자동해산
 - 구성인원 : 9명 이내(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)
 - 위 원 :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
 - 위원회 기능 : 민간위탁의 타당성 · 필요성 및 수탁기관 심사 등
- 추진일정(예정)
 - 수탁기관 모집 : 2021. 10.~ 11.
 -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: 2021. 11.
 - 수탁기관 협약 체결 : 2021. 12.

1) 「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운영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5. 검토의견
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“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「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4조²⁾에 따르면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”는 청소년 관련 사

2) 제14조(지원센터의 위탁)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

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동의안은 2021.12.31.일자로 3년 동안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